

제24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9.11.12.)

조례안 ·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춘 곤]

목 차

1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
2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5
3	거창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8
4	거창군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자재 조달대행(부분위탁) 연장 동의안 -----	25
5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 -----	28
6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	32
7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 -----	39
8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지원 출연안 -----	45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9. 10. 21.
- 나. 발 의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10. 21.

2. 제정이유

- 구제역·AI·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질병에 대해 상시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질병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거창군 축산종합 방역소를 설치·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방역소의 설치 근거와 위치를 정함(안 제2조)
- 나. 방역소의 시설을 정함(안 제3조)
- 다. 방역소의 기능을 정함(안 제4조)
 - 1) 연중 축산농가 세척·소독 및 소독확인증 발급, 평시운영기간에는 필요시 실시
 - 2) 방역관리를 위한 축산농가 이동경로 및 정보수집 등
- 라. 방역소의 운영 기간 및 시간을 정함(안 제5조)

- 1) 특별방역기간 : 10월~이듬해 2월, 오전 9시~오후 10시
 - 2) 평시방역기간 : 3월~9월, 오전 9시~오후 6시
- 라. 방역소 운영 인력 및 위탁을 정함(안 제6조)
- 1) 상주인력 1명 원칙
 - 2) 방역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근거 등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144조
-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예산 122,720천원 확보예정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범위 합의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9. 9. 24. ~ 10. 14.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구제역·AI·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질병에 대해 상시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질병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거창군 축산종합 방역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26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말, 당나귀, 노새, 면양·염소(유산양을 포함한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다음의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 가. 제1종 가축전염병: 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구제역(口蹄疫), 가성우역(假性牛疫), 블루텅병, 리프트계곡열, 럼피스킨병, 양두(羊痘), 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 아프리카마역(馬疫),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수포병(水疱病), 뉴캐슬병,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 나. 제2종 가축전염병: 탄저(炭疽), 기종저(氣腫疽), 브루셀라병, 결핵병(結核病), 요네병, 소해면상뇌증(海綿狀腦症), 큐열,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일본뇌염, 돼지테센병,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비저(鼻疽), 말전염성빈혈, 말바이러스성동맥염(動脈炎), 구역(瘧疾), 말전염성자궁염(傳染性子宮炎), 동부말뇌염(腦炎), 서부말뇌염, 베네수엘라말뇌염, 추백리(雛白痢), 가금(家禽)티푸스, 가금콜레라, 광견병(狂犬病), 사슴만성소모성질병(慢性消耗性疾病)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 다. 제3종 가축전염병: 소유행열, 소아카바네병, 닭마이코플라스마병,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부저병(腐蛆病)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 3.~8. (생략)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이하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신고 체계 구축

2.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시행
 3.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
 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가축방역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조사·연구
 7. 가축방역 전문인력 육성
 8. 살처분·소각·매몰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
 9.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매몰에 직접 관여한 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
 10. 가축전염병 비상대응 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
 11. 그 밖에 가축방역시책에 관한 사항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매몰에 대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매몰 후보지를 미리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시·도 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의 인력·장비·기술 등의 보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수립할 때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전염병 방역 요령 및 세부 방역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9. 10. 21.
- 나. 발 의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10. 21.

2. 제정이유

- 천적곤충 생산·공급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 친환경농업 육성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천적곤충 생산 및 공급 내용 신설(안 제6조)
- 나.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을 정함(안 제9조~제16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예산 844백만원 확보예정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8. 28. ~ 9. 18.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전부반영함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천적곤충 생산·공급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 친환경농업 육성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어업을 실천하는 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이와 관련된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1. "친환경농어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이하 "농어업"이라 한다)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수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유기농수산물
 - 나.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수산물(이하 "무농약농수산물등"이라 한다)
3. "유기"[Organic]란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준수하고, 허용물질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이하 "유기식품등"이라 한다)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일련의 활동과 그 과정을 말한다.
4. "유기식품"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비식용유기가공품"이란 사람이 직접 섭취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여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되는 가공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용기·포장,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및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한다.
6. "유기농어업자재"란 유기농수산물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7. "허용물질"이란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수산물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8. "취급"이란 농수산물, 식품, 비식용가공품 또는 농어업용자재를 저장, 포장 [소분(小分) 및 재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운송, 수입 또는 판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9. "사업자"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조·가공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에 관한 육성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활동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경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유통·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에 관한 육성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교육·훈련·기술개발·경영지도 등을 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친환경농어업 및 유기식품등의 육성·지원

제7조(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또는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 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어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 방안
- 3의2. 친환경 약제와 병충해 방제 대책
4.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 등의 개발·보급·교육 및 지도 방안
5. 친환경농어업의 시범단지 육성 방안
6. 친환경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및 유기식품등의 생산·유통·수출 활성화와 연계강화 및 소비 촉진 방안
7. 친환경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방안
8.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
9. 육성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 방안
10. 제26조 및 제35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육성 방안

11. 그 밖에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운 육성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8조(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 ①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도 실천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군·자치구 실천계획을 세워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약, 비료, 가축분뇨, 폐농어업자재 및 폐수 등 농어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 준수, 가축분뇨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폐농어업자재의 투기(投棄) 방지 및 폐수의 무단 방류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농어업 자원 보전 및 환경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농어업 용수, 대기 등 농어업 자원을 보전하고 토양 개량, 수질 개선 등 농어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경지 개량, 농어업 용수 오염 방지,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와 제16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제13조(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교육·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하거나 교육·지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4조(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교육·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친환경농수산물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5조(친환경농어업의 기술교류 및 홍보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사업자는 친환경농어업의 기술을 서로 교류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

어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수 사례를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수출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자금 등을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1. 이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 또는 친환경농수산물
2. 이 법에 따라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

제4장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

제34조(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무농약농수산물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대상과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생산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무농약농수산물등을 생산 또는 취급하는 자는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을 받으려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무농약농수산물등을 다시 포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저장, 운송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제한, 심사 및 재심사, 인증 변경승인,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갱신 및 유효기간의 연장,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수산물등"으로 본다.

⑤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수산물등"으로 본다.

제35조(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심사원 등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유효기간·갱신·지정변경, 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인증업무의 휴업·폐업 및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수산물등"으로 본다. <개정 2014. 3. 24.>

제36조(무농약농수산물등의 표시기준 등) ① 제34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무농약농수산물등에 직접 또는 그 포장등에 무농약, 무항생제(축산물 또는 수산물만 해당한다), 활성처리제 비사용(해조류만 해당한다)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도형이나 글자를 표시(이하 "무농약농수산물등표시"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날개로 판

매하는 때에는 표시판 또는 뜻말에 표시할 수 있다.

②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생산방법 등에 관한 정보의 표시, 그 밖에 표시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표시"는 "무농약농수산물등표시"로 본다. <개정 2016. 12. 2.>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농어업 환경의 유지·개선 실적
2.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이하 "유기식품등"이라 한다), 친환경농수산물 또는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유통·수출 실적
3.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농약농수산물등"이라 한다) 또는 유기식품등의 인증 실적 및 사후 관리 실적
4. 친환경농어업 기술의 개발·보급 실적
5. 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교육·훈련 실적
6. 농약·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량 감축 실적
7. 축산분뇨를 퇴비 및 액체비료 등으로 자원화한 실적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중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축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축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 및 유기임산물(이하 "유기농축산물"이라 한다)
 - 나. 무농약농산물 및 무항생제축산물(이하 "무농약농산물등"이라 한다)
3. "유기식품등"이란 유기농축산물, 유기가공식품(수산물과 수산물 가공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유기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며, 유기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유기농어업자재"란 유기농축산물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곤충의 사육기준 및 규격 등) ① 삭제 <2015. 8. 1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천적곤충, 화분매개곤충, 환경정화곤충, 식·약용곤충 및 학습·애완곤충 등으로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과 규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1.>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2. 11.>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사육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 2. 11.>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규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8.>

1. 장수풍뎅이

가. 1등급: 성충 68mm 이상, 유충 30g 이상

나. 2등급: 성충 50mm 이상부터 68mm 미만까지, 유충 25g 이상부터 30g 미만까지

다. 3등급: 성충 50mm 미만, 유충 25g 미만

2. 장수풍뎅이 외의 곤충: 규격 제한 없음. 다만, 사람의 생명·신체와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곤충의 종류와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16.2.11.>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제6조제1항 관련)

구분	종류	
1. 천적 곤충	가. 노린재류	담배장님노린재, 미끌애꽃노린재, 참딱부리긴노린재, 으뜸애꽃노린재
	나. 풀잠자리류	칠성풀잠자리붙이, 어리줄풀잠자리, 갈고리뱀잠자리붙이
	다. 딱정벌레류	갈색반날개, 민개알반날개, 꼬마무당벌레, 꼬마남생이무당벌레, 무당벌레, 각지무당벌레
	라. 파리류	진디혹파리, 응애잠이혹파리, 호리꽃등에
	마. 기생벌류	명충알벌, 쌀좀알벌, 검정알벌, 어비진디벌, 콜레마니진디벌, 싸리진디벌, 복숭아혹진디벌, 진디면충좀벌, 굴파리좀벌, 온실가루이좀벌, 황온좀벌, 담배가루이좀벌, 알깡충좀벌, 배노랑금좀벌, 잎굴

		파리고치벌, 배추나비고치벌, 예쁜가는배고치벌, 프루텔고치벌, 개미침벌
	바. 응애류	긴털이리응애, 가는빨다리좁응애, 마일스응애, 사막이리응애, 칠레이리응애, 지중해이리응애, 오이이리응애, 팔라시스이리응애, 나팔이리응애
	사.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2. 화분 매개 곤충	서양뒤영벌, 토종 뒤영벌류(<i>Bombus</i> spp.), 서양종꿀벌, 동양종꿀벌, 가위벌과(Megachilidae spp.), 연두금파리, 검정뺨금파리, 배짧은꽃 등에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3. 환경정화 곤충	아메리카동애등애, 빨소똥구리, 집파리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4. 식용 곤충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곤충과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정된 곤충	
5. 약용 곤충	말벌과(Vespidae spp.), 땅강아지, 등에과(Tabanidae spp.), 가뢰과(Meloidae spp.), 누에나방(백강잠, 잠사), 사마귀과(Mantidae spp.), 매미과(Cicadidae spp.), 굼벵이류(Holotrichia spp.), 왕지네, 그 밖에 「약사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토종 곤충(지벌충과 전갈은 제외한다)	
6. 학습·애완 곤충	가. 잠자리목	왕잠자리, 어리부채장수잠자리, 어리장수잠자리
	나. 사마귀과	넓적배사마귀, 왕사마귀, 사마귀, 좁사마귀
	다. 대벌레류	대벌레, 긴수염대벌레
	라. 메뚜기류	우리벼메뚜기, 풀무치, 방아깨비, 섬서구메뚜기
	마. 여치류	여치, 긴날개여치
	바. 귀뚜라미과	왕귀뚜라미, 쌍별귀뚜라미, 방울벌레
	사. 수서노린재류	장구애비, 게아재비, 물자라류, 소금쟁이류
	아. 뱀잠자리과	뱀잠자리류 유충
	자. 수서딱정벌레류	물방개류, 물뽕뽕이, 애물뽕뽕이, 물매미
	차. 딱정벌레과	뿔쟁이딱정벌레, 홍단딱정벌레, 우리딱정벌레
	카. 사슴벌레류	사슴벌레류
	타. 장수풍뎅이과	외뿔장수풍뎅이, 장수풍뎅이
	파. 꽃무지과	사슴풍뎅이, 점박이꽃무지류, 긴다리호랑꽃무지, 꽃무지
	하. 반딧불과	반딧불과 전종
	거. 거저리과	아메리카왕거저리, 갈색거저리

	너. 하늘소류	톱하늘소, 벼들하늘소, 검정하늘소, 하늘소, 청줄하늘소, 루리하늘소, 모자주홍하늘소, 초록사향하늘소, 벗나무사향하늘소, 홍가슴풀색하늘소, 호랑하늘소, 목하늘소, 후박나무하늘소, 솔수염하늘소, 알락하늘소, 큰우단하늘소, 화살하늘소, 울도하늘소, 뽕나무하늘소, 참나무하늘소, 알락수염하늘소, 팔점긴하늘소
	더. 나비류	배추흰나비, 큰줄흰나비, 남방노랑나비, 꼬주명주나비, 호랑나비, 제비나비류, 암끝검은표범나비, 왕나비류
	러. 개미류	일본왕개미, 홍가슴개미
	머. 거미류	황닷거미, 별농발거미, 먹닷거미
	머.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7. 사료 용 곤 충	「사료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미사료의 품목별 기준 및 규격에 해당하는 곤충으로 갈색거저리, 아메리카왕거저리, 아메리카동애동에, 집파리, 쌍별귀뚜라미, 왕귀뚜라미, 누에나방, 깔다구과 유충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8. 그 밖 의 용 도 곤 충	오배자면충, 구리금파리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 현행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군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말하는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산물의 적용범위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인증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생산되어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농산물을 말한다.
4.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5. “광역단지”란 1,000헥타르 이상의 농경지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생

산, 가공, 판매 등의 활동을 함께하기 위하여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가 조직한 영농단지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인의 책무) 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촉진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는 군의 친환경농업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그 회원 및 농업인들에게 교육·훈련·기술개발·영농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친환경농업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제6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① 군수는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향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
5. 친환경농업단지 육성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7. 친환경농업인의 소득증대 방안
8. 실천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9.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실천계획을 수립하려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실천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단지 육성
2. 친환경농업실천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
3.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 수수료
4.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의 활성화
5. 친환경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사항
6.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추진에 따른 필요사항
7. 인증농산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산량 감소에 대한 소득보전이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에 따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연구모임 등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유통사업자

제9조(지원절차) ①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려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연구모임 및 유통사업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대상자 선정기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자 선정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및 유통현황, 영농규모
2.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3. 친환경농업 발전 기여도
4. 친환경농업 실천의지
5. 그 밖에 개별 사업규정에 따른 적합성 등

제11조(농업환경개선)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업환경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농지의 개량
2. 농업용수 오염방지 및 개발
3. 농업환경개선을 위한 토양검정
4. 그 밖에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양 및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교육)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 친환경농업의 생산·유통에 관한 교육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삭제 2012.10.16.)

제4장 광역친환경농업사업단 운영

제25조(광역친환경농업사업단 구성) ①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거창군 광역친환경농업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

② 사업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관리를 위한 지역 농업인단체의 구성원 수 등 비중이 큰 단체의 장이 된다.

④ 부단장은 사업단 위원 중 호선한다.

⑤ 사업단의 위원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품목별 농업인단체의 대표, 지역대표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

제26조(사업단의 기능)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광역단지 육성계획 수립·변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 광역단지 사업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광역단지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 집행 등 중요사항의 조정·결정
4. 사업단의 시설·장비의 효율적인 활용 및 유지·관리
5. 각종 친환경농자재의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
6. 광역단지 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7. 광역단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 및 소비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업단과 관련된 각종 사안에 관한 사항

제27조(지원사업) 군수는 광역단지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속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력증진사업
2.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각종 연구·개발사업
3. 안전농산물 생산 및 원활한 유통을 위한 지원사업
4. 신기술 개발 및 보급사업
5.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6. 그 밖에 광역단지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8조(사업단장의 직무)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사업단 업무를 통할한다.

② 사업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추진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사업단 운영) ① 사업단장은 광역단지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방침을 제정하여 이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회의소집 및 의결방법
2.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각종 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운영방법
3. 각종 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확보

② 광역단지의 운영방침을 제정하려면 사업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③ 사업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단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장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및 사업평가

제30조(친환경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 군수는 인증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1. 인증농산물의 품목별 협의체 구성과 브랜드화 및 마케팅
2. 인증농산물의 포장재 개발지원
3. 인증농산물의 직거래 지원
4. 인증농산물의 학교급식 및 대규모 소비자 확보 지원
5. 인증농산물의 홍보물 설치 및 각종 홍보매체 활용지원
6. 인증농산물의 안정성 확보 및 상장경매 유도 지원

제31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사업 결과를 연 1회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농업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유통실적
2. 친환경농업 육성추진 관심도
3. 화학비료·농약 감축 실적 및 퇴비·유기질비료 등 친환경농자재 사용실적
4. 친환경농산물 브랜드화 및 마케팅 전략
5. 그 밖에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친환경농업 실천 실적이 우수한 농업인이나 마을, 읍면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거창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9. 10. 2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10. 21.

2. 제안이유

- 거창푸드종합센터의 위탁기간이 2019. 12. 23.자 만료 도래 예정으로 관리·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를 위해
- 거창푸드종합센터를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와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따라 능력을 갖춘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시설명 : 거창푸드종합센터
- 나. 위치 :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72
- 다. 주요시설

계	1층				2층
	전시판매장	저온 저장고	선별장	화장실	
712.5㎡	180㎡ 판매대, 쇼케이스	107.8㎡ (4실)	162.2㎡ 컨베이어, 포장기 등	82.5㎡	180㎡ 사무실, 회의실

라. 위탁대상 사무범위

- 거창푸드 홍보 마케팅 활동
- 농산물 순회수집, 가공, 판매
- 소규모 직거래 장터 운영
- 농가 생산자 조직 구성 교육 등 각종 보조사업
- 위탁시설 관리 운영
- 꾸러미 사업 참여농가 조직화
- 기타 거창푸드 육성·발전을 위한 업무

마. 위탁기간 : 위수탁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 위탁기간 만료 시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 결정

바.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사. 소요예산 : 연 390,000천원 정도

-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로컬푸드 교육 및 홍보비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7조

나. 향후계획

- 수탁기관의 선정(공개모집) : 2019. 11월 중순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단체 결정 : 2019. 12월 초
- 위·수탁계약 체결 및 공증, 시설점검 : 2019. 12월 중순
- 수탁운영 실시 : 2019. 12. 24. ~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거창푸드종합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리·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거창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I 위탁개요

□ 위탁현황

- 위탁기간 : 2013. 12. 24. ~ 2019. 12. 23. / 6년
 - 1차(2013. 12. ~ 2016. 12.), 2차(2016. 12. ~ 2019. 12.)
- 수탁자 : 거창공유농업사회적협동조합(대표 김제열)
- 위탁내용
 - 거창푸드 홍보 마케팅 활동
 - 농산물 순회수집, 가공, 판매
 - 소규모 직거래 장터 운영
 - 농가 생산자 조직 구성 교육 등 각종 보조사업
- 위탁 지원액 : 1,356백만원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지원액(백만원)	120	160	250	250	250	326

□ 시설현황

- 위치 :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72
- 사업비 : 1,381백만원(도비 570, 군비 811)
- 주요시설

계	1층				2층
	전시판매장	저온 저장고	선별장	화장실	
712.5m ²	180m ² 판매대, 쇼케이스	107.8m ² (4실)	162.2m ² 컨베이어, 포장기 등	82.5m ²	180m ² 사무실, 회의실

II

그간 운영연황

○ 주요 매출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별 성과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
	총매출	전시판매장	꾸러미	거창물	
계	3,543,976	2,062,301	260,831	2,009,901	
2014	297,823	131,422	21,470	144,931	-
2015	501,882	171,466	46,458	283,790	168%
2016	619,490	269,861	38,893	310,613	123%
2017	913,131	430,180	30,522	452,282	147%
2018	1,212,088	650,000	60,782	501,306	132%
2019	789,057	409,372	62,706	316,979	2019년 상반기

※ 2014년 위탁 첫 해 대비 2018년 매출액 406% 증가

○ 그간 성과

-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지역 농산물 홍보 효과 제고
- 농가 순회수집을 통해 영세농, 고령농 등 농산물 판로개척이 어려운 농가의 판로 확보 마련
- 농가 조직화를 통해 학교급식 등 공공 납품 기회 마련
- 직거래 장터 운영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지역 농산물 소비 문화 형성
- 식생활 체험, 공동체지원농업 등 사업을 통해 로컬푸드 사업에 대한 의식 개선 및 관심 제고

III

민간위탁 추진(안)

○ 위탁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내지 제16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9조(위탁운영)

○ 위탁범위

- 거창푸드 홍보 마케팅 활동
- 농산물 순회수집, 가공, 판매
- 소규모 직거래 장터 운영
- 농가 생산자 조직 구성 교육 등 각종 보조사업
- 위탁시설 관리 운영
- 꾸러미 사업 참여농가 조직화
- 기타 거창푸드 육성·발전을 위한 업무

○ 위탁기간 : 2019. 12. 24 ~ 2022. 12. 23. / 3년

○ 수탁자격 : 공고일 현재 거창군 관내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공고기간 : 2019년 11월말

- 공고내용 : 시설의 개요, 사업현황, 위탁기간, 신청서 접수,
선정기준 등

- 공고방법 : 지역신문 및 군 홈페이지 게재 등

- 심사일자/선정통보 : 2019. 12. 13.(금) / 2019. 12. 17.(화)

○ 수탁기관 선정기준

-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9조 제2항 반영
-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확보,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 종합적 검토하여 선정

○ 민간위탁심의 위원 선정

- 모집기간 : 2019년 12월초
- 모집인원 : 6명 ~ 8명 정도
- 모집대상 : 군 소속 공무원, 대학교수, 변호사 등
- 근 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심의위)

IV 기대효과

- 전문기관 위탁으로 로컬푸드 활성화 및 농가 소득 증대 기대

거창군학교급식센터 식자재
조달대행(부분위탁) 연장 동의안
[검토보고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9. 10. 2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10. 21.

2. 제안이유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식자재 수급을 효율적으로 대행하고
그간의 운영 노하우 활용을 위해 대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대 행 기 관 : 거창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최 창 열)
 - 연 장 기 간 : 2020. 2. 1. ~ 2023. 1. 31.(3년)
 - 현)대행기간 : 2017. 2. 1. ~ 2020. 1. 31.(3년)

3. 주요내용

□ 시설현황

- 가. 시 설 명 : 거창군학교급식지원센터
- 나. 위 치 : 거창군 거함대로 3372-30
- 나. 준 공 일 : 2011. 11. 12
- 라. 시설규모 : 4,017㎡ / 건축면적 : 1,119㎡

- (1층) 입하장, 전처리시설, 소포장실, 출하장
- (2층) 사무실, 회의실, 전산실 등

□ 운영현황

가. 운영주체 : 거창군 직영(센터장: 농업기술센터소장)

- 대행기관 : 거창축협(운영팀 5명, 소분팀 7명, 배송팀 6명)

나. 운영내용

- (거창군) 공급가격 결정, 식자재 계약(군↔학교),
물류 배송 지도·감독

- (거창축협) 식자재 구매·소분·배송 대행, 시설장비 관리

다. 예산지원 : 없음

식자재 조달수수료(10~13%)로 인건비 등 운영비 충당

라. 그간 위탁·대행 현황

- 2012 ~ 2016년 : 거창사과원예협동조합(위탁)
- 2017 ~ 2020년 : 거창축산업협동조합(대행)

4. 참고사항(관련조례)

-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 제18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9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거창군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자재 조달대행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리·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에 의거 기존 조달대행 업무를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가. 경영분석

(단위 : 천원)

년도	월	수 입			지 출			손 익
		합계	매출	기타	합계	매입	경 비	
2017		6,276,332	6,268,112	8,220	6,271,971	5,616,287	655,684	4,361
2018		6,348,490	6,345,704	2,794	6,363,528	5,656,571	706,945	-15,030
2019	소 계	4,266,377	4,256,668	9,707	4,286,410	3,792,541	493,869	-20,033
	1월	108,070	104,192	3,878	130,549	92,732	37,817	-22,479
	2월	213,612	213,432	180	228,299	191,779	36,520	-14,687
	3월	711,053	710,866	187	713,788	633,430	80,358	-2,735
	4월	780,490	778,803	1,687	761,754	694,013	67,741	18,736
	5월	769,148	768,852	296	755,001	685,802	69,199	14,147
	6월	699,929	699,657	272	695,563	623,256	72,307	4,366
	7월	597,749	594,642	3,107	606,584	528,105	78,479	-8,835
	8월	386,328	386,224	100	394,872	343,424	51,448	-8,546

나. 식재료 공급현황

연도	구 분	금 액(A)	구 입 처		관내업체 사용율(%) (B/A)X100
			관 내(B)	관 외(C)	
2017	합 계	6,268,112	3,572,870	2,695,242	57%
	농산물	1,828,792	1,115,790	713,002	61%
	수산물	607,229	67,709	539,520	11%
	축산물	1,533,625	1,409,450	124,175	92%
	공산품	2,298,466	979,921	1,318,545	42%
2018	합 계	6,345,704	3,875,452	2,470,252	61%
	농산물	1,960,233	1,221,840	738,393	62%
	수산물	601,268	104,162	497,106	17%
	축산물	1,563,596	1,485,436	78,160	95%
	공산품	2,220,607	1,064,014	1,156,593	48%
2019. (1월~8월)	합 계	4,256,668	2,616,236	1,640,432	61%
	농산물	1,251,438	818,842	432,596	65%
	수산물	393,833	68,346	325,487	17%
	축산물	1,001,998	948,909	53,089	95%
	공산품	1,609,399	780,139	829,260	48%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9. 10. 2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10. 21.

2. 제안이유

-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부지조성이 완료됨(19.10.2.) 따라 주기장의 효율적 관리·운영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민간 위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사업명 :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 나. 주기장 현황

명칭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위치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394번지 일원 (구, 88고속도로 폐도부지)				
면적	6,310㎡ (1,908평)	건축면적	99.75m (30평)	주기면수	약 120대
시설물	관리동 1동 (싱크대, 신발장, 환풍기 2, 수도 2, 전기쿡탑 2구)				

다. 운영계획

- 운영방법 : 민간위탁(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
 - 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제1항,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수탁자 조건 : 거창 군내에 주소를 둔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
- 민간위탁 배경
 - 수요자 중심의 공영주기장 관리·운영으로 행정능률 향상
 - 건설기계 운행자의 자발적 주기 유도로 주택가·도로변 등 불법주기 개선
- 수탁단체(자) 선정 : 공개모집
 - 근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 수탁단체(자) 평가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평가(정량+정성)

라. 공유재산 관리위탁

-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위탁(공개모집)
 - 근거 : 공유재산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7조제5항
- 행정재산 사용료 부과(부과대상 : 수탁단체)
 - 사용료 :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 ※ 가격기준 : (토지)공시지가, (관리동) 감정평가
 - 근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7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제1호
- 사용기간 : 2년(1회에 한해 갱신 가능)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5년 이내)
 - ※ 최초 운영에 따른 문제점 보완 등을 위해 사용기간 2년으로 조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제19조제4항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 제24조

나. 향후계획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 : '19. 10.~11.
- 공영주기장 운영계획 인가 신청(군→道) : '19. 10.
- 민간위탁사무 군 의회 동의 : '19. 10.~11.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6~9인) : '19. 11.
- 공영주기장 수탁단체(자) 모집 공고 : '19. 11.
- 공영주기장 수탁단체(자) 선정 및 협약체결 : '19. 12.
- 행정재산 관리위탁, 민간위탁 공보게재 : '20. 1.
- 공영주기장 운영(예정) : '20. 1.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부지조성이 완료('19.10.2.) 됨에 따라 주기장의 효율적 관리·운영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거창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근거로 수탁단체에 행정재산 사용료(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를 부과하고,

수탁단체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운영하는 것임.

※ 가격기준 : (토지)공시지가, (관리동) 감정평가

- 수요자 중심의 공영주기장 관리·운영,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9. 10. 21.
- 나. 발 의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10. 21.

2. 제안이유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3. 출연개요

- 근거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 대 상 : 경남신용보증재단
- 사 업 비 : 250백만원(출연 예정금액)
- 2020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백만원)

사업기간	2019년 예산액	2020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2020년	200	250	250	-	-	250	-

- 사업내용 : 거창군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및 컨설팅 지원

4. 부서 의견

- 경영안정자금 융자한도액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증액되고 경기침체 불안과 저이자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자금의 확보심리 등의 이유로 2019년 거창군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대출목표액이 100억원에서 150억으로 증액되어 지원되었음.
-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이 현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하여 2020년 거창군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대출목표액을 200억으로 상향조정이 필요한 실정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또한 2억원에서 2.5억원으로 상향조정이 필요함.

5.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 출연기관 현황 : 붙임
- 출연금 배정 협조공문 사본 각 1부 : 붙임
- 경남 시·군별 출연 필요금액 산정 : 붙임

6. 검토 의견

-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지역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치한 단체이며,
- 재단의 기본재산은 정부 17.74%, 경남도 30.5%, 시·군 5%, 금융기관 42.77%, 기업체 등이 3.99% 출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어

재단운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출연금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 현재, 경남 18개 시·군이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군도 2019년 2억 원을 출연하여 신용보증수수료 감액, 보증기금 공급 확대의 우대 효과를 거양하고 있으므로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7. 참고자료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출연한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배분하는 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 시·도 및 중앙회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설립근거	법률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전화번호: 1644-2900		
					홈페이지:www.gnsinbo.or.kr		
주요연혁	1996.06.05. 경남신용보증조합 설립 2000.03.20. 경남신용보증재단 전환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	
인원현황 (‘19. 9. 16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104명		98명		6명		
임원 (‘19. 9.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구**	前솔로몬저축은행 대표이사			‘18.11.1~20.10.31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이**	現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19.4.25~	
		김**	現경상남도 일자리경제국장			‘18.4.24~	
		김**	現경남은행 창원영업본부장			‘19.6.1~21.5.31	
		한**	現농협은행 경남영업부장			‘19.6.1~21.5.31	
		김**	現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전무이사			‘19.6.1~21.5.31	
		임**	前경남소상공인연합회장			‘19.6.1~21.5.31	
감사	장**	現장** 회계사무소대표			‘18.9.1~20.8.31		
고문							
주요기능	신용보증, 신용조사, 구상채권관리, 기본재산 관리, 경영지도						
자본금 ¹⁾ (단위:백만원)		201,313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77,437 (직전연도말 기준)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7	2018	2019	재무현황 (백만원) ‘18.12.31기준	자산	241,711 (자산 총액)
	예산액 ²⁾	53,153	57,530	70,989		부채	40,398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³⁾	2,850	4,123	7,550		자본 ¹⁾	201,313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8. 12. 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9,409			32,156		△12,747	

시군별 출연현황 및 필요금액 산정

(19.5.31기준, 단위 : 억원, 건)

구분	시군 출연금			'18. 道정책자금		총 보증잔액			대위변제액		
	'18년	'19년	'20년	이용액	건수	'17년	'18년	증감	'17년	'18년	증감
계	25	37	51	1,052	3,685	11,832	13,283	1,451	205	300	95
창원	5	8	11	507	1,508	4,160	4,565	405	72	101	29
김해	2	3	5.5	90	338	1,940	2,226	286	38	52	14
진주	2	3	4	107	462	1,446	1,597	151	20	24	4
양산	2	3	3.5	68	293	946	1,033	87	13	27	14
거제	2	2	3.5	71	270	939	1,098	159	17	42	25
통영	1	3	3	31	125	574	702	128	10	13	3
사천	1	2	2.5	38	128	379	424	45	5	7	2
밀양	1	1	2	23	96	192	215	23	4	5	1
함안	1	2	2.5	42	134	261	313	52	9	7	-2
거창	1	2	2.5	6	28	238	265	27	3	5	2
창녕	1	1	1.5	17	95	132	138	6	3	6	3
고성	1	1	1.5	3	15	137	159	22	4	4	0
남해	1	1	1.5	33	123	105	121	16	1	1	0
산청	1	1	1.5	2	11	99	101	2	1	2	1
함양	1	1	1	1	5	95	104	9	1	1	0
하동		1	1.5	2	11	71	79	8	2	2	0
합천	1	1	1.5	5	19	66	82	16	1	0	-1
의령	1	1	1	6	24	52	61	9	1	1	0

* 전년도 우수 출연시군 부담 완화 등 가중치 적용, 보증이용 실적, 손실발생액 등 종합 검토 후 시군별 분담액 산정

시·군별 출연 현황

○ 출연금

(2019.6.30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합계	출 연 금					기타
		정부	경남도	시·군	금융기관	기업체 등	
금 액	2,369.6	419.8	722.9	118.5	1,013.7	94.7	
구성비	100%	17.74%	30.5%	5.0%	42.77%	3.99%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9. 10. 2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10. 21.

2. 제안이유

-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사업을 통한 석산·석재가공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및 거창화강석의 고부가 가치화와 제품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려는 것임.

3. 출연개요

- 근거법령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및 제9조
- 대 상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이사장 구인모)
- 사 업 비 : 180백만원(출연 예정금액)
- 2020년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백만원)

사업기간	2019년 예산액	2020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2020년	80	180	180	-	109	71	-

- 2018년 ~ 2020년(3년) 연차사업으로 2020년 군특 지방이양 되어 도비로 편성되었으나 3년 연차사업 계획에 따라 전액 편성되었음

○ 사업내용

- 산림 석골재자원 품질 관리시스템 개발
- 석재 표면 가공기술 개발
 - 표면가공복합기법
 - 보급형컬링스톤 표면가공 기술개발

4. 부서 의견

- 우리 군 실물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석재산업계의 석재 표면 가공기술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석재자원의 활용도를 다양하게 확대하는 등 국내 석재산업 선도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신기술 지원사업이 필요함
- 국도비가 지원되는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이 2020년 종료되며, 마지막으로 지원되는 국도비에 군비를 매칭하여 기술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석재에 함유된 라돈 등의 환경문제로 인하여 불안감이 조성되었지만 거창화강석연구센터는 라돈, 석면 등의 유해성 분석을 실시하여 거창화강석이 안전한 석재임을 입증

5. 참고사항

- 출연기관 현황 : 붙임
- 관계 법령 : 붙임

6. 검토의견

-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는 안정적인 원석 확보 및 자연 친화적인 폐석산 복구기술개발사업, 화강석 신소재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 산·학·연 공동기술연구개발과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산업인력 교육 및 기술지도 사업 등의 추진과 거창화강석의 우수성 홍보 및 기업지원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이번 사업은 창조적 융복합화를 통한 전통적 석재산업에서 기술집약형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각종 생산·유통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석산·석재가공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및 거창화강석의 고부가가치화와 제품 인지도 증대를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코자 하는 것임(2015년 178백만원, 2016년 309백만원, 2018년 180백만원, 2019년 80백만원 지원).
- 생산 효율화 시설지원을 통한 기술 집약형 석재산업을 완성하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은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출연기관 현황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설립근거	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32조			전화번호 : 055-943-3924			
	규칙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홈페이지 : granite.re.kr			
주요연혁	법인설립허가 : '07. 1. 31			기관형태 (출자, 출연)			
인원현황 ('19. 10.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5명		5명		0명		
임원 ('18. 9.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구○○	거창군청(거창군수)		당연직		
	상임이사	김○○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장		"		
	비상임이사	이○○	경남도립거창대학 산학협력단장		"		
		최○○	NH농협은행 거창군지부장		"		
		조○○	거창석제조합(주) 대표		"		
		김○○	거창석산협회장		"		
		김○○	거창군청(미래전략과장)		"		
		주○○	경남도립거창대학 교수		'19. 3. 21 ~ '22. 3. 20		
		김○○	한국승강기대학 교수		'19. 3. 21 ~ '22. 3. 20		
	감사	임○○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19. 3. 21 ~ '22. 3. 20		
		최○○	거창군청(산림과장)		당연직		
	고문	변○○	변법식변호사사무소 대표		'19. 3. 21 ~ '22. 3. 20		
강○○		모동기업사 대표		-			
주요기능	거창화강석 1, 2차산업 관련 기업지원, 연구 및 개발, 품질유지 및 관리, 공인시험 서비스 등 석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자본금 ¹⁾ (단위:백만원)	10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7	2018	2019	재무현황 (백만원) '18.12.31기준	자산	203 (자산 총액)
	예산액 ²⁾	488	487	655		부채	10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³⁾	200	180	180		자본 ¹⁾	193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8. 12. 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305			289		16	

1) 자본금은 자본(자산-부채)의 한 부분이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됨

2)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3) 해당 기관 예산액(2) 번항목)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

※ 위 항목중 해당사항이 없으면 '공란'으로 처리

【 관계법령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정) 2006.12.12 조례 제1825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화강석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제 2조 (법인격 및 명칭)

연구센터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 라 한다)라 한다.(개정 2008. 1. 14)

제 3조 (사무소)

연구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 4조 (운영 등)

- ①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8. 1. 14)
- ② 연구센터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조 (임원)

- ① 연구센터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를 두되 임기와 임면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 6조 (사업)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안정적인 원석 확보 및 자연 친화적인 폐석산 복구기술개발사업
2. 화강석 신소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3. 산·학·연 공동기술연구개발과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4. 산업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유통망 구축 운영사업
5. 화강석 제품의 성능 시험 및 검사, 품질 평가 등 사업
6.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위임·위탁사업과 용역사업
7. 산업인력 교육 및 기술지도 사업
8. 그 밖에 연구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7조 (재산조성 및 운영경비)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

1.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제 8조 (수익사업)

연구센터는 제6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 9조 (출연금 등의 지원)

- ① 군수는 연구센터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경비와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② 연구센터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0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 11조 (업무의 위탁)

- ① 군수는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연구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업무 위탁시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 12조 (보고 및 검사)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연구센터의 경영상황 및 중요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 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지원 출연안 〕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9. 10. 21.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10. 21.

2. 제안이유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려는 것임.

3. 출연개요

- 근거법령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및 제9조
- 대 상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이사장 구인모)
- 사 업 비 : 180백만원(출연 예정금액)
- 2020년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백만원)

사업기간	2019년 예산액	2020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기 타
2020년	180	180	180	-	-	180	-

- 사업내용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운영(인건비 등)

4. 부서의견

- 거창화강석 산업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중인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함.

5. 참고사항

- 출연기관 현황 : 붙임
- 관계 법령 : 붙임

6. 검토의견

-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는 센터장 1명, 연구원 2명, 생산직원 2명 등 총 5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출연금을 2013년부터 2017년 까지 매년 200백만원을 지원해 왔으며, 2018년도부터는 180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연구센터는 비영리 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거창화강석 산업 발전을 위하여 꾸준한 홍보 활동과 기업지원 등을 통하여 석재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단체표준시험분석기관 운영을 통하여 전국 석재관련 업체의 시험분석 업무를 지원하고, 석산 개발에 필요한 채석경제성 평가와 연구, 개발 등의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향후 연구센터가 기업체와 연계하여 거창화강석 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등 기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이번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은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출연기관 현황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설립근거	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32조			전화번호 : 055-943-3924			
	규칙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홈페이지 : granite.re.kr			
주요연혁	법인설립허가 : '07. 1. 31			기관형태 (출자, 출연)			
인원현황 ('19. 10.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5명		5명		0명		
임원 ('18. 9.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구○○	거창군청(거창군수)		당연직		
	상임이사	김○○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장		"		
	비상임이사	이○○	경남도립거창대학 산학협력단장		"		
		최○○	NH농협은행 거창군지부장		"		
		조○○	거창석제조합(주) 대표		"		
		김○○	거창석산협회장		"		
		김○○	거창군청(미래전략과장)		"		
		주○○	경남도립거창대학 교수		'19. 3. 21 ~ '22. 3. 20		
		김○○	한국승강기대학 교수		'19. 3. 21 ~ '22. 3. 20		
	감사	임○○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19. 3. 21 ~ '22. 3. 20		
		최○○	거창군청(산림과장)		당연직		
	고문	변○○	변법식변호사사무소 대표		'19. 3. 21 ~ '22. 3. 20		
강○○		모동기업사 대표		-			
주요기능	거창화강석 1, 2차산업 관련 기업지원, 연구 및 개발, 품질유지 및 관리, 공인시험 서비스 등 석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자본금 ¹⁾ (단위:백만원)	10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7	2018	2019	재무현황 (백만원) '18.12.31기준	자산	203 (자산 총액)
	예산액 ²⁾	488	487	655		부채	10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³⁾	200	180	180		자본 ¹⁾	193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8. 12. 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305			289		16	

1) 자본금은 자본(자산-부채)의 한 부분이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됨

2)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3) 해당 기관 예산액(2) 번항목)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

※ 위 항목중 해당사항이 없으면 '공란'으로 처리

【 관계법령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정) 2006.12.12 조례 제1825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화강석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제 2조 (법인격 및 명칭)

연구센터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 라 한다)라 한다.(개정 2008. 1. 14)

제 3조 (사무소)

연구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 4조 (운영 등)

- ①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8. 1. 14)
- ② 연구센터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조 (임원)

- ① 연구센터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를 두되 임기와 임면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 6조 (사업)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안정적인 원석확보 및 자연 친화적인 폐석산 복구기술개발사업
2. 화강석 신소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3. 산·학·연 공동기술연구개발과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4. 산업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유통망 구축 운영사업
5. 화강석 제품의 성능 시험 및 검사, 품질 평가 등 사업
6.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위임·위탁사업과 용역사업
7. 산업인력 교육 및 기술지도 사업
8. 그 밖에 연구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7조 (재산조성 및 운영경비)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

1.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제 8조 (수익사업)

연구센터는 제6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 9조 (출연금 등의 지원)

- ① 군수는 연구센터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경비와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② 연구센터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0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 11조 (업무의 위탁)

- ① 군수는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연구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업무 위탁시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 12조 (보고 및 검사)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연구센터의 경영상황 및 중요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 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